

학칙시행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89조에 의거하여 학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사업무의 적정과 원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은 본 대학교 제규정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이 규정에 의한다.

제 2 장 입 학

제3조(입학의 지원절차) ①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소정의 입학원서와 구비서류에 전형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구비서류는 모집시에 총장이 이를 정하여 일간신문에 공고한다.

③입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출한 서류와 납부한 전형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4조(입학의 절차) 입학의 허가를 받은 자는 소정의 기일내에 등록금 납부와 수학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입학의 취소) ①입학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학의 허가를 취소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소정의 기일내에 입학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학칙 제16조 또는 제17조에 정한 자격에 미달한 것이 확인된 때

②입학이 취소된 자의 학적취득은 무효로 하며, 입학을 위하여 제출한 서류와 납부한 납입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 3 장 등록과 수강신청

제 1 절 등 록

제6조(등록) ①학생은 각 학기 등록기간내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등록은 등록기간내에 지정된 금융기관에 등록금 기타의 납입금을 납부함으로써 완료된다.

③등록기간은 교무처장이 통지 또는 공고한다.

제7조(미등록의 효과) 등록기간내에 등록을 아니한 자는 제적에 의하여 학적을 상실한다.

제8조(수업년한 초과자의 등록) 졸업에 필요한 학점 또는 성적의 미달로 인하여 수업년한을 초과하여 학점을 이수(국·내외 대학과의 교류학점 포함)하는 자는 등록기간내에 다음 각호에 정하는 등록금을 납부하고 수강할 수 있다.

1.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당해학기 수업료의 6분의1 해당액
2. 4학점부터 6학점까지는 당해학기 수업료의 3분의1 해당액
3. 7학점부터 9학점까지는 당해학기 수업료의 2분의1 해당액
4. 10학점 이상은 당해학기 수업료의 전액

제 2 절 수강신청

제9조(시기) ①학생은 각 학기 개시 전 수강 신청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수강신청기간은 교무처장이 통지 또는 공고한다.

제10조(절차) 수강신청은 각 학기 수강신청기간 내에 수강할 교과목을 본인이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준수사항) 수강신청시에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매학기 수강신청은 12학점(8학기는 1교과목)이상 18학점 이내로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되, 2010~2011년도 입학자 및 외국인학생은 19학점, 2009년도 이전 입학자 및 법학과, 5년제 건축학과, 간호학과, 약학과, 공학교육인증 이수 대상자(1학년에 한함)는 21학점까지 한의예과 및 한의학과는 23학점까지, 의예과는 24학점까지, 의학과는 30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3.05.31., 2013.12.26., 2016.02.25., 2016.03.29. 2017.08.29.)(삭제 2016.05.24.)
2. 3학점 이내에서 이월되는 학점은 차기학기에 한하여 유효하며 이후 학기로는 이월되지 않는다.(신설 2015.03.18.)
3.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석사연계과정, 학·석사통합과정, 직전학기 성적의 평점평균이 4.3이상인 학생으로 조기졸업 자격에 적합한 학생은 3학

점을 초과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6.08.30.)

4. 수업시간이 중복되는 교과목은 수강신청을 하지 못한다.

5. 교직과정 이수 신청자는 교직과정운영규정을 참조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6. 동일한 교과목을 중복 수강하여 이수하였을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으며 재수강으로 처리한다.

7.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생군사교육단 학생의 군사학 수강신청 학점은 합산하지 아니한다.(신설 2019.05.28.)

제12조(편입학생의 수강신청) 편입학생은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 중 본 대학교에서 인정하는 교과목을 제외한 교과목에 대하여 이 규정에 따라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3조(수업년한 초과자의 수강신청) 수업년한을 초과하여 재학하는 자도 이 규정에 따라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4조(신청과목의 변경) ①수강신청한 과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된 기간내에 변경한 후 그 확인서를 단과대학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수강신청 확인 및 변경원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과목의 학점취득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15조(신청과목의 포기) ①수강신청한 교과목을 포기하고자 하는 자는 학기초 4주 이내에 지도교수(전공주임)와 학과(부)장을 경유하여 학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수강신청을 포기한 과목을 제외한 교과목의 총학점은 제11조 제1호에 정한 최저학점 미만으로 하지 못한다.

③제1항의 허가없이 포기한 교과목의 성적은 낙제(F)로 처리하며, 허가를 얻어 포기한 교과목은 포기(W)로 처리하나 성적평점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16조(학점취득의 포기) ①등록한 학기에 정당한 사유없이 학점을 취득하지 아니하거나 수강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도 당해 학기를 재학년한 및 등록횟수에 계산한다.

②(삭제 2018.05.29.)

③취득한 학점은 재수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포기하거나 삭제하지 못한다.(개정 2014.02.27.)

제17조(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수강신청취소) 기말시험 이전에 결석허용한도를 넘는 기간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당해 학기 전교과목의 수강신청을 취소할 수 있다.

제 4 장 시험과 성적

제 1 절 시험

제18조(시험의 종류) ①시험은 학사일정에 따라 각 학기마다 정기시험으로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과목의 성질에 따라 기말시험만을 실시할 수 있다.

②각 교과목의 담당교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부정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응시자격) 수강과목의 수업일수 4분의 1을 초과하여 결석한 경우에는 그 교과목의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없다.(개정 2019.05.28.)

제20조(응시) 응시자는 시험일정표에 따라 응시하여야 하며, 학생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제21조(시험의 감독) 교무처장은 시험개시 일주일전까지 시험실시와 시험감독자에 대하여 해당 교강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6.02.25.)

제22조(부정행위자)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한자에 대하여는 부정행위를 한 시험과목을 응시 무효 조치한다.

제23조(추가시험) ①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정기시험에 응하지 못한 자는 추가시험을 신청할 수 있다.

1. 질병
2. 유고결석사유
3. 기타 총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②추가 시험을 원하는 자는 제1항 각호의 사유발생 후 7일 이내에 추가시험 응시원을 행정실에 제출하여 학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추가시험응시원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질병 : 진단서 1통
2. 유고결석사유 : 유고결석사유 증빙서류
3. 기타 사유자 : 부득이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추가시험의 승인을 얻은 자는 담당교수에게 승인서를 제시하고 담당교수가 기말시험 종료 후 10일 이내에서 정한 기일에 추가시험에 응하여야 한다.

④추가시험의 최고성적은 B⁺로 한다.

제 2 절 성 적

제24조(등급과 평점) 학업성적은 학칙 제48조에 정한 등급과 평점으로써 평가한다.

제25조(성적평가) ①교과목의 성적은 담당교수가 학생의 시험성적, 출석성적과 과제물 성적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그러나 실험, 실습, 실기 기타 이에 준하는 학업의 성적은 따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성적은 각 교과목별로 시험성적 60%(과제물을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80%), 출석성적 20%, 과제물성적 20%(과제물을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0%)의 비율로 평가·종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교과목의 성질에 따라 정기시험을 보고서 제출 또는 실기 발표로써 대체한 경우에는 그 성적을 시험성적에 반영한다.

④정기시험 대신에 부정기시험을 실시한 경우에는 시험성적에 반영하여야 하고, 정기시험에 추가하여 부정기시험을 실시한 경우에는 과제물성적에 반영할 수 있다.

⑤당해 학기에 1회의 시험만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시험만으로 시험성적을 평가한다.

⑥담당 교수 판단으로 중간시험 후 해당 수업 학점 이수가 어려운 학생에 대하여 재시험 등 기말시험 이후 평가방법을 선택하여 평가할 수 있다.(신설 2017.08.29.)

⑦성적평가 방법과 요소별 반영 비율 등 강좌별 성적처리 기준은 수업계획서 등에 사전 공지하여 수강학생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신설 2017.09.26.)

제26조(성적분포) ①모든 교과목의 성적 분포비율은 A등급 이상 30% 이내, B등급 이상 누계 65%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7.09.26., 2018.05.29.)

(삭제 2018.05.29.)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양, 전공, 교직, 실험실습, 기타 이에 준하는 교과목의 성적평가 기준은 별표1과 같다.(개정 2012.04.20.)

③장애학생 및 외국인학생은 상대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절대평가 할 수 있다.(신설 2018.02.22.)

④성적기준을 변경할 시에는 반드시 교무처장의 협조와 총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신설 2012.04.20.)

제26조의2(성적평가기준의 조정) 제25조 및 제26조에도 불구하고 수준별 수업 강좌 또는 교과목 특성이나 강의 운영 특성을 반영하여 성적평가기준을 조정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17.09.26.)

제27조(성적공시 등) ①각 교과목의 담당교수는 학기말시험후 소정기간내에 성

2-1-2~6 제2편 학 칙

적평가 결과의 열람을 공지하여야 한다.

② 열람된 성적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각 교과목 담당교수의 확인을 거쳐 수정할 수 있다.

③ 각 교과목의 담당교수는 소정기간내에 당해 학기 성적평가표를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행정실에서는 제출된 성적평가표를 담당교수별로 정리하여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05.29.)

제27조의2(성적우수자 장학금) 성적우수자에 대하여 장학금 지급 규정에 의거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8.08.23.)

제27조의3(출결관리 점검) 성적평가 시 출결사항 반영 및 수업일수 4분의 1일 초과 결석자에 대한 F등급 부여 여부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한다.(신설 2018.08.23. 개정 2019.05.28)

제28조(학점인정) ① 각 교과목의 성적은 D⁰등급 이상을 취득학점으로 인정한다.

② 제출된 성적표에 성적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낙제(F)로 처리한다.

제28조의2(재수강) ① 재수강은 이미 취득한 교과목의 성적 평점이 C⁺이하인 과목에 한하여 허용한다.(신설 2013.05.31)

② 재수강 교과목의 성적 평점은 A⁰를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13.05.31)

③ 재수강 교과목의 성적은 기 취득한 성적과 상관없이 최종 취득한 성적을 반영한다.(신설 2013.05.31.)

④ 재수강 신청 자격요건과 성적처리 등에 대한 점검을 학기초와 학기말에 각각 실시한다.(신설 2018.08.23.)

제29조(입학 전 특별과정 이수학점 인정) ① 학칙 제37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수시입학생이 입학하기 전에 본 대학교에서 운영하는 특별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4학점 이내에서 본 대학교의 교양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고등학교 재학중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주관한 대학과목선이수제에서 이수한 교과목에 대하여 5년 이내 본 대학교에 입학한 경우 입학년도에만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 수시입학생의 학점 및 성적인정은 점수에 의하며, 대학과목선이수제 학점 및 성적은 본 대학교의 교과목에 준하여 인정하며 성적처리는 P(pass), F(fail)로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의하여 취득한 총학점은 최대 6학점까지 인정한다.

제30조(평점평균) 성적평점의 평균(이하 '평점평균'이라 한다)은 각 수강신청과목 학점에 취득평점을 곱하여 계산한 합계를 수강신청학점수로 나누어 산출

한다.

제31조(이의신청 및 정정) ①일단 제출된 성적은 정정할 수 없다. 다만, 기재착오(성적의 착오 또는 누락)가 있을 경우에는 당해 학기 성적표 발송 후 15일 이내에 담당교수의 사유서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답안지와 기타 증빙서 등 구체적인 자료를 첨부하여 성적정정원을 총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총장은 전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성적정정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성적의 정정을 허가한다.

제32조(군입대자의 성적) 중간시험에 응시한 후 군에 입대한 때에는 출석율이 4분의 3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중간시험 성적을 당해 학기의 성적으로 인정하되, 출석율 및 예습성적을 참작하여 평가한다.

제33조(유고결석자의 성적) ①유고결석으로 인하여 중간시험 또는 기말시험 중 어느 하나에 응하지 못한 경우에는 성적인정원의 제출에 따라 응시한 시험만으로써 성적평가를 할 수 있다.

②유고결석으로 인하여 중간시험과 기말시험에 모두 응하지 못하거나 당해 학기에 1회만을 실시한 시험에 응하지 못한 경우에는 추가시험에 응한 때에만 성적평가를 할 수 있다.

제34조(부정행위자의 성적) 부정행위로 인하여 시험이 무효로 된 자의 성적은 낙제(F)로 처리된다.

제35조(학점취소) 일단 취득한 학점이라도 착오나 부정행위에 의하여 그 취득이 인정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학점의 취득을 취소하고 낙제(F)로 처리한다.

제36조(성적열람) 전반적인 학점취득의 상황을 확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성적증명서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37조(성적평가자료의 보관) 각 교과목의 담당교수는 성적평가표의 부분과 답안지 기타의 성적평가자료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9.05.28.)

제38조(학적부정리) ①제출된 성적은 다음학기 개시전까지 학적부에 등재한다.

②학생의 신상변동이나 상벌사항은 학적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 3 절 결 석

제39조(무단결석)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과목 수업일수 4분의 1일을 초과하여 결석한 경우에는 그 교과목의 성적을 낙제(F)로 처리한다.(개정 2019.05.28.)

제40조(유고결석) ①직계상고, 국가의무, 학교의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결석을 한 경우에는 유고결석으로 간주하여 그 결석기간을 출석으로 간주

2-1-2~8 제2편 학 칙

한다.

②유고결석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4 절 학사경고와 유급(개정 2018.05.29.)

제41조(학사경고)(개정 2018.05.29.)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총장이 학사경고 처분을 한다. 다만, 수업년한 초과자는 제외하며, 의학계학과의 경우에는 동조에 의한 학사경고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42조 제2항에 의한 유급을 적용한다.(개정 2013.09.27., 2018.05.29.)

1. 각 학기의 평점평균이 1.5미만인 때
2. 각 학기에 3과목 이상 F등급으로 평가받은 때
3. 재학 중 수강신청을 아니한 자(신설 2018.05.29.)

②학사경고 처분을 한 때에는 즉시 처분을 받은 자의 소속학과장에게 통지하고, 학사경고통지서(별지서식 제1호)에 의하여 본인 또는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8.05.29.)

③학사경고 처분을 받은 자는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제공하는 학습법 수강 또는 각종 학생교육지원프로그램 참여를 의무화하고, 미참여시 수강학점을 3학점 제한한다.(신설 2014.12.24., 개정 2018.05.29., 2018.08.23.)

④학사경고 처분을 받은 자는 지도교수 상담을 해야 한다.(신설 2014.12.24., 개정 2018.05.29.)

⑤학사경고자의 지도교수 상담여부와 학습법 이수 의무화 준수에 대해 확인 및 점검한다.(신설 2018.08.23.)

제42조(유급) ①학칙 제53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 해당자로 유급하고자 하는 자는 지도교수(전공주임) 및 학과(부)장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유급원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당해 학년도 취득학점이 12학점 미만인 때
2. 당해 학년도 평점평균이 1.2 미만인 때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학계학과의 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장이 유급처분을 할 수 있다.

1. 당해 학기의 성적평점의 평균이 1.8미만인 자(개정 2013.12.26.)
2. (삭제 2013.12.26.)
3. 당해 학기의 전공과목에 한 과목 이상 과락이 있는 자(개정 2013.12.26.)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칙 제12조의 수업일수를 채우지 못하

거나, 당해년도(의학계의 경우에는 당해학기) 수강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단위로 총장이 유급처분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1회에 한하여 6개월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의학계학과 학생의 경우에는 3회까지 인정한다.

④교무처장은 각 학년말 15일전까지 유급대상자 명단을 총장에게 보고하고 결재를 받아 유급조치를 한다.

⑤유급처분을 한 때에는 즉시 처분을 받은 자의 소속 학과장에게 통지하고, 유급처분통지서(별지서식 제2호)에 의하여 본인 또는 보호자에게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⑥유급처분을 받은 자의 당해 학년도 취득학점은 무효로 한다. 다만 무효학기는 재학년한에 포함되며, 처분된 성적경고는 통산한다.

제 5 장 편입학

제43조(요건) 편입학은 학칙 제17조에 의거하여 허가할 수 있다.

제44조(시기) 편입학의 실시는 각 학기초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45조(이수 및 학점인정) ①편입생이 전적대학에서 이미 이수한 교과목에 대하여는 본 대학교 학칙 제52조의 수료학점 규정에 준하여 학점인정을 한다.

②편입생은 본 대학교에서 요구하는 전공기초 및 전공 최소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학칙 부칙에 의하여 특별로 편입학한 경우에는 따로 정한다.

③제3학년 2학기 편입생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편입 후 4학기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1. 일반대학 수료자 중 3학년 1학기 수료 자격에 미달한 자
2. 전문대학 졸업자와 법령에 의하여 동등한 학력(산업대, 교육대, 방송통신대, 각종학교의 졸업 또는 수료자)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정원외(학사, 군위탁, 귀국유학생 등)로 편입한 자

제46조(편입학의 취소) ①편입학한 자로서 학칙 제17조에 정한 자격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편입학을 취소한다.

②편입학을 취소한 경우에도 이미 납부한 납입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 6 장 휴학, 복학, 자퇴와 제적

제 1 절 휴 학

2-1-2~10 제2편 학 칙

제47조(사유) ①질병, 병역,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3주를 초과하여 수업을 계속할 수 없는 때에는 휴학할 수 있다.

②신입생과 편입생의 일반휴학은 입학후 첫학기에는 질병 또는 병역,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경우 외에는 휴학하지 못한다.(개정 2013.12.26.)

제48조(휴학기간) ①일반휴학 기간은 2학기를 초과하지 못하며, 통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병역의무와 임신·출산·육아, 창업, 질병으로 인하여 수학을 할 수 없는 기간은 이를 일반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임신·출산·육아와 창업, 질병으로 인한 휴학기간은 2학기를 초과하지 못하며 통산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3.12.26., 2014.05.28., 2017.02.23.)

②제1항의 일반휴학기간이 만료된 학생이 일반적인 사정에 의해 수학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는 소속학과장의 제청으로 최대 4개학기까지 추가하여 허가할 수 있다.(신설 2017.02.23.)

③의무복무기간 이후 학생 의사에 따라 복무기간이 연장되는 경우는 입대 휴학기간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7.02.23.)

제49조(절차) ①휴학을 원하는 자는 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휴학원의 제출기한은 다음과 같다.

1. 일반휴학의 경우

학기개시전에 학교가 정한 기간내에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다만 등록을 마친 자로서 휴학을 원하는 자는 중간고사 실시 이전에 허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질병휴학의 경우

학기중에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휴학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 10일 이내에 3주 초과 이상의 종합병원 발행의 진단서를 첨부한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입대휴학의 경우

휴학 또는 재학중에 군에 입대하게 될 경우 입영통지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입대휴학 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임신·출산·육아휴학의 경우

사유발생 1개월 이내에 의사진단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3.12.26.)

5. 창업휴학의 경우

학기중 창업으로 휴학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

부하여 휴학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아래 표에 표기한 업종의 창업은 창업휴학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신설 2014.05.28.)

NO	대상 업종	코드번호 세세분류
1	금융 및 부동산	K64~66
2	부동산업	L68
3	숙박 및 음식점업(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및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은 제외)	I55~56
4	무도장 운영업	91291
5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9112
6	기타 게임링 및 베팅업	9124
7	기타 개인 서비스업(산업용 세탁업은 제외)	96
8	그 밖의 제조업이 아닌 업종으로서 산업부령이 정하는 업종	-

제 2 절 복 학

제50조(절차) ①휴학한 자가 복학하는 때에는 각 학기 복학기간내에 복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개정 2013.09.27.)

②입대휴학자가 군복무를 마치고 복학하는 때에는 복학원에 주민등록초본 각 1통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 3 절 자 퇴

제51조(자퇴)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보호자와의 연서로 그 사유를 명시한 자퇴원을 지도교수(전공주임)를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 4 절 제 적

제52조(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총장이 제적할 수 있다.

1. 각 학기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2. 휴학기간 경과 후 등록기간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3. 연속3회 또는 통산4회 성적 경고 처분을 받은 자
4. 재학년한 내에 졸업하지 못한 자

2-1-2~12 제2편 학 칙

5. 의학계의 경우에는 연속3회 또는 통산4회 유급한 자
6. 다른 대학(교)에 입학한 자
7. 사망 또는 질병 기타의 사유로 학업을 지속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8. 징계에 의하여 퇴학처분을 받은 자

제53조(통지) 제적처분을 한 때에는 즉시 제적된 자의 소속 학과장에게 통지하고, 제적처분통지서(별지서식 제3호)에 의하여 본인 또는 보호자에게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 5 절 재입학

제54조(요건, 시기) ①퇴학한 자 또는 제적된 자가 재입학을 지원할 때에는 정원에 결원이 있는 경우에 2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성적경고로 제적된 자가 재입학한 후 다시 동일한 사유로 제적된 경우에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②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재입학을 하지 못한다.(개정 2014.05.28.)

③재입학은 소정의 신청기간내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55조(절차) 재입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된 서류를 행정실에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고지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56조(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무처장이 정하고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7 장 학점은행제

제57조(학위수여요건) ①총장은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고 본 대학교에 해당학과 또는 전공이 개설되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에게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1.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2.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7조에 의하여 교양 30학점 이상, 전공 60학점 이상, 총 140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
3. 본 대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이 84학점 이상인자
4. (삭제 2018.05.29.)

②제1항 제3호의 본 대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은 학칙 제4조 제1항에 명기된 단과대학의 교육과정에서 취득한 학점 및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본 대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을 통산한다.

③학사학위소지자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6조 제1항 2호에 의거하여 다른 전공분야의 학위를 취득하려는 경우 해당 전공분야에서 전공 48학점 이상을 본 대학교에서 취득하여야 한다.(신설 2018.05.29.)

④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학위를 취소할 수 있다.(신설 2018.05.29.)

제58조(학위수여절차) ①학위수여 요건을 구비한 자가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위신청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이 발행한 학점인정서 및 본교에서 정하는 서류를 소정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12.20.)

②총장은 학위수여 신청자에 대하여 학력인정 기준 적합 여부 및 이중학위수여 여부 등에 관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확인을 거쳐 별지서식 제4호에 의한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18.12.20.)

제59조(학위의 종류 및 전공) ①본교 학점은행제로 수여할 수 있는 학위의 종류 및 전공은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에 의한 표준교육과정과 학칙 가천대학교학점은행제학사운영세칙 제31조에 한 한다.(개정 2018.12.20., 2019.05.28)

②학위종류 및 전공의 심의는 유사전공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심의하여야 하며, 유사전공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18.12.20.)

③학위의 종류 및 전공이 가천대학교학점은행제학사운영세칙 제31조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와 5년제 건축학전공 및 의학계열, 사범계열은 학위수여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8.12.20., 2019.05.28)

제 8 장 학부입학생 전공결정

제60조(지도교수) 가천리버럴아츠칼리지 자유전공에 학부장과 전공별 지도교수를 둘 수 있다. 다만, 자유전공내에는 필요한 경우 계열별로 2~3인의 지도교수를 둘 수 있다.

제61조(시기 및 기준 등) ①학칙 제4조 및 제25조의 2에 의하여 학부로 입학한 학생은 학교에서 정한 기간에 소정의 절차를 거쳐 해당 지도교수, 학부장 및 대학장의 허가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전공을 정하고, 2학년 1학기부터 전공이수를 시작한다.(개정 2016.02.25., 2016.03.29.) (삭제 2016.05.24.)

②가천리버럴아츠칼리지 자유전공 입학생의 경우에는 유아교육학과, 간호학과, 치위생학과, 응급구조학과, 방사선학과, 물리치료학과, 약학과, 의학계,

2-1-2~14 제2편 학칙

예·체능계를 제외한 해당계열 전공으로 희망전공을 우선하여 결정하되, 특정 학과나 전공의 편중에 따른 수용능력을 고려하여 학교에서 정한 학과 및 전공 정원의 200%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글로벌경영학트랙으로의 전공 결정은 평점평균 3.0이상과 토익700점 이상 충족시 가능하다.(개정 2013.09.27., 2015.12.29., 2017.05.23)

③가천리버럴아츠칼리지 자유전공으로 입학한 학생이 휴학, 제적, 자퇴 등으로 복학이나 재입학시에는 동일 학년도의 재학생과 동일한 방법으로 전공을 결정한다.

④2학년 1학기로 복학이나 재입학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전공결정을 한 후 휴학이나 자퇴를 신청하여야 한다.

⑤전공결정 대상자가 소정기간 내에 전공지망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학부장이 직권으로 전공을 결정할 수 있다.

제62조(전공결정위원회) 전공결정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부내에 전공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63조(전공결정방법) ①전공결정의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각 학부 및 자유전공에서 정한다.

1. 학생 희망전공
2. 성적평점평균(동일한 경우 평점합계가 높은 자)
3. 취득학점수
4. 기타 전공결정위원회가 정한 사항

②학부 및 자유전공에서는 전공 설명회와 전공결정방법과 일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학생들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제 9 장 산업체 특별전형 입학자

제64조(산업체 특별전형 입학자에 대한 특례) ①학칙 제4조에 의하여 전문계 고졸 재직자로 산업체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은 졸업시까지 산업체 재직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입학한 학생은 매학기 등록기간 이전 대학에서 정한 기간 내 재직증명서와 재직 사실에 대한 증빙서류(국민연금 가입확인서 및 4대 보험 중 1개 이상 가입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간내 재직증명서와 해당 재직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적 처리한다. 단, 산업체의 도산이나 구조조정 등으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직기간은 퇴직 다음날로부터 8개월 이내로 제한하며, 구직기간 경과 이전에 제2항의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제적 처리한다.

③전문계고졸 재직자로 입학한 학생은 전과(부)를 할 수 없다.

④전문계고졸 재직자로 입학한 학과의 교육과정(명칭변경 2015.08.28.) 및 수업운영 방법은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규정에서 규정된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본 대학교의 학칙과 제 규정 등을 준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시행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개정시행규정 중 제65조 내지 제67조는 2007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되, 2006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자는 종전의 시행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시행규정은 2009년 2월20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개정시행규정중 제25조의 2(전공의 결정)조항은 2008학년도 바이오나노학부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규정은 2010년 12월28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정의 개정)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대학 제규정에 명시된 “자유전공학부”은 “자유전공”으로 변경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규정은 2011년 03월0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생활과학대학 태권도학과에서 태권도·경호학과로 변경됨에 따라 2011학년도 신입생부터 태권도·경호학으로 학위를 수여한다.

부 칙

이 시행규정은 2012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규정은 2012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

2-1-2~16 제2편 학 칙

부 칙

이 시행규정은 2012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규정은 2013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의 2 신설 규정은 2014년 03월 01일 이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시행규정은 2013년 0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개정시행규정 중 제61조 제2항은 2014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시행규정은 2013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시행규정 개정에도 불구하고 제42조는 2014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규정은 2014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규정은 2014년 06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규정은 2014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규정은 2015년 0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규정은 2015년 0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규정은 2015년 0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규정은 2015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규정은 2016년 0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규정은 2016년 0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규정은 2016년 0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규정은 2016년 0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규정은 2017년 0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규정은 2017년 0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규정은 2017년 0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규정은 2017년 0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규정은 2018년 0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시행규정은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시행규정 개정에도 불구하고 제26조 1항과 별표1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1-2~18 제2편 학 칙

부 칙

이 시행규정은 2018년 0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규정은 2018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규정은 2019년 0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규정은 2019년 0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규정은 2019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서식 제1호) (개정 2018.05.29.)

학사경고통지서

대학 학과 학년
학번 : 성명 :

위의 학생은 20 학년도 제 학기에 성적이 불량하여 다음과 같이 학사경고 처분을 받았기에 통지합니다.

다 음

1. 경 고 사 유 :
2. 신 청 학 점 :
3. 평 균 평 점 :
4. 경고처분일자 : 년 월 일

20 . . .

가 천 대 학 교 총 장 (인)

귀 하

(별지서식 제2호)

유급처분통지서

대학 학과 학년

학번 : 성명 :

위의 학생은 20 학년도 제 학기에 성적이 불량하여 다음과 같이 유급처분을 받았기에 통지합니다.

다 음

1. 경 고 사 유 :
2. 신 청 학 점 : 제1학기 학점, 제2학기 학점
3. 평 균 평 점 : 제1학기 학점, 제2학기 학점
4. 년간평점평균 :
5. 유급처분일자 : 년 월 일

20 . . .

가 천 대 학 교 총 장 (인)

귀 하

(별지서식 제3호)

제적처분통지서

대학 학과 학년

학번 : 성명 :

위의 학생은 20 학년도 제 학기에 다음과 같이 제적처분을
받았기에 통지합니다.

다 음

1. 제 적 사 유 :

2. 제적처분일자 : 년 월 일

20 . . .

가 천 대 학 교 총 장 (인)

귀 하

2-1-2~22 제2편 학 칙

(별지서식 제4호)

제 호

학 위 증

성 명

주민등록번호

위 사람은 아래의 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자격을 취득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함.

전 공 : ○○○○학과<전공> (○○학사)

년 월 일

가 천 대 학 교 총 장 ○○○박사 (인)

학위번호 : 가천대-학점-년도-일련번호

※이 증서는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9조 및 가천대학교학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함

(별표1) 성적평가기준(개정 2012.11.30., 2017.08.29., 2017.09.26., 2018.05.29. 2019.02.21., 2019.08.29)

성적평가 비율	대상교과목
<상대평가 I>	
<input type="checkbox"/> A등급 이상 30% 이내 B등급 이상 누계 65% 이내	▶ 수강인원 21명 이상 교과목
<상대평가 II>	
<input type="checkbox"/> A등급 이상 35% 이내 B등급 이상 누계 75% 이내	▶ 수강인원 20명 이하 교과목 ▶ 실험·실습 교과목 ▶ 대형강좌로 승인된 교과목 ▶ 사이버강좌(MOOC) 교과목 ▶ Flipped Learning 교과목 ▶ 전공 영어강의 교과목
<상대평가 III>	
<input type="checkbox"/> A등급 35% 이내	▶ 교직교과목 ▶ 전공교직교과목 ▶ 유아교육과 전공교과목 ▶ 자기주도 수련
<상대평가 IV>	
<input type="checkbox"/> A등급 50% 이내	▶ 안보학, 안전및조직관리사례연구, 조직리더십, 조직리더십사례연구 ▶ 4학년 전공 교과목 (건축학과 5학년, 약학과 6학년 전공) ▶ 졸업작품 교과목 ▶ 상대평가IV로 승인된 교양영어 교과목 ▶ 의과대학 의예과·의학과 전공교과목 ▶ 임상실습교과목 ▶ 수강인원 10명 이하 교과목
<상대평가 V>	
<input type="checkbox"/> A등급 70% 이내	▶ P-실무프로젝트(학과프로젝트, G프로젝트)
<PASS/FAIL>	▶ P-실무프로젝트(현장실습) ▶ 요청에 의해 승인된 교과목

※ 이론과 실습을 겸한 교과목은 실험·실습교과목으로 간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